

소수주주 보호의 법리 -증권집단소송제도 찬반론을 중심으로-

김성태 (金星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소액주주운동을 보는 시각

1. 시민단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001년 8월 13일 참여연대는 자유기업원(피고 법인)과 그 대표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1994년 '각계 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된 시민단체(정관 제2조)이다. 이 단체는 설립 이래 다양한 각종 국가사회문제에 관하여 정책대안제시 및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을 벌여왔으며, 사회 각 분야의 비리·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시민참여활동을 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소액주주운동'이라 하겠다.

소액주주운동에 기업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2001년 초에도 경제5단체가 일부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¹⁾ 그 논조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운동을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경영에 간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본건 소송도 소액주주운동을 보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각이 정면충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본건 소송의 소장을 살펴보면,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거론된 각 논점은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잘 드러나므로 자세히 보기로 한다.

(1) 문제의 발단

피고 민00은 2001. 3. 2. 삼성전자(3월 9일) 및 SK 텔레콤(3월 16일) 등 대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전경련회관에서 「소액주주운동은 자제돼야!」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의 발언을 하였고,²⁾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글 또한 피고 법인이

1) 2001.3.7. '소액주주 운동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라는 공동선언문 참조. 한겨레신문 2001.3.9.

2) 「소액주주운동은 자제돼야!」 -- 원장 민00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fe.org>)에 게시하여 공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함)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당일 방송매체의 뉴스 프로그램과 그 다음날 신문 매체에 보도되었다.

2. 피고 민00은 2001. 5. 2.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하로 아래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함)³⁾을 피고 법인 소속의 회원 등 약 2만 5천여명에게 전자우편(e-mail)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가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는 이 운동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생략.)

2. 그러나 2001년 현재 참여연대가 계속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과도한 것이며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점 심분 숙고하시어 앞으로는 소액주주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3. 아울러 경제문제에 관하여 한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우선 “은행소유지분(8%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법규)한도”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금융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망컨대 소유지분확대가 결국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장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생략.)

오늘 기왕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그 동안 교육, 노동, 그리고 기업문화와 관련하여 하고 싶었던 몇 마디를 첨가코자 합니다.

1. (생략.)

2.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노동운동이 얼마나 실업을 양산하고 있는지, 한국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이념으로 내몰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사업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또 수많은 NGO가 얼마나 기업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3. 자유기업원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건너야 할 고갯길에 걸림들이라고 생각되는 교육, 노동, NGO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폐해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더 이상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언정 걸림들이 되지 않기를 피차에 바라기를 양청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이어 기자들과의 문답형식의 간담회에서, “참여연대측은 그간 벌여온 노동운동이 얼마나 많은 실업을 양산해 왔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주장과 달리) 주주권을 침해하고, 기업이윤 극대화를 저해하는 만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선임하고 감사위원회까지 설치한 데이콤은 오히려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번져 직장폐쇄는 물론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참여연대가 지난 4년 동안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민중에 의한 자본통제’라는 반(反)시장경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저해할 경우 주주의 이익은 오히려 침해되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외국자본이 우리나라를 빠져 나가고 노동생산성은 낮아져 전체의 복지수준도 떨어지게 된다”, “소액주주운동가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 및 시민운동가들에 의한 기업통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음.

3) 市場經濟와 그 敵들: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 복잡성을 얘기한다면 심드렁할 정도로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환경 속에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은 심상치가 않다. 지금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무역전쟁중이다. 세계적인 전쟁을 ‘무한전쟁’이라고 한다. 승자만 사는 시장을 세계화라고도 한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어제의 모습이 아닌 디지털 세상이요 네트워크 세상이요 또 무선통신의 세상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전쟁의 와중에 어이없게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전적인 전쟁이 진행 중에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은 바로 50년 전에 치렀던 6·25전쟁의 망령이다. 아니 6·25전쟁의 지속이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 구시대의 전쟁을 소리 없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여러 국면에서 좌익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노동계는 ‘민노총’이라는 노동단체가 힘을 쓰고 있다. 어느 기업도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고 전임노조원 월급을 안 줄 수 없으며, 그런 연고로 원한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게 돼 있다.

...(중간 생략)...

재벌개혁에 이르러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물려서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가급적 기업의 대주주를 억압하고 사외이사나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정경유착을 차단하고 문어발식 투자를 막는다고

로 송신한데 이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시민단체의 반박논거4)

1) 이 사건 제1기사의 허위성

첫째, 피고는 원고가 지난 97년부터 전개해 온 소액주주운동을 일방적으로 매도·비방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전개해 온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액주주들을 모아 일정지분을 확보하여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또한 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적 방법을 행사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재벌그룹 총수와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부당내부거래와 계열 금융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을 하여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경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봉건적인 기업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경영관행을 개혁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소액주주운동은 그 동안 묵인되어 왔던 재벌기업들의 각종 총수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내부거래를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국내·외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원고의 이와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원고의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해 온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문가 모임인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가 선정한 제1회 'ICGN 올해의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나 논리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작정 “참여연대측은 그간 벌여온 노동운동이 얼마나 많은 실업을 양산해 왔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의 소액주

해서 상호지급보증을 줄이게 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라 하고 또 계속 감시감독하기 위해 재벌의 연결채무제표를 작성케 하고 있다. 그래도 기업은 다른 부문보다는 아적인 형편이 나은지도 모를 일이다.

...(중간 생략)...

지난 수년동안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서 대주주 및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들의 목적은 '민(民)에 의한 자본의 통제'라는 무시무시한 목표가 숨어있다고 한다. 따라서 소액주주를 위한 운동은 만일 성공한다면 그 성공한 때가 바로 그 운동을 중지해야 하는 그리고 바로 본색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재정통합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민중의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정책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그 원인을 이상한 데로 돌리려고 난다. 책임지는 일 없이 교묘히 투쟁하여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일별해 볼 때 지금 정부는 참여연대, 전교조, 민노총 등과 합세하여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소위 '민중'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개혁일런지는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 변혁적인 것이다. 이러다가는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정지되며 도덕이 소멸할 것이 분명하다. 어찌하다가 우리가 좌경화의 길로 들어섰는가. 지금이라도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국민필기가 필요하다. 좌익(左翼)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右翼)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00, 자유기업원 원장, bkmin@cfe.org)

4) 편의상 원문을 다소 수정하였음.

주운동은 (주장과 달리)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이윤 극대화를 저해하는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민중에 의한 자본통제’라는 반(反)시장경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저해할 경우 주주의 이익은 오히려 침해되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외국자본이 우리나라를 빠져 나가고 노동생산성은 낮아져 전체의 복지수준도 떨어지게 된다.”, “소액주주운동가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 및 시민운동가들에 의한 기업통제다”는 등으로 원고를 폄하·비방하는데 급급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둘째, 피고는 “참여연대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선임하고 감사위원회까지 설치한 데이콤은 오히려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번져 직장폐쇄는 물론 주가도 곤두박질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원고는 2000. 1. 13경 LG그룹 계열사인 데이콤을 소액주주운동의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장치’에 대한 제안을 전달하였고 이를 데이콤과 데이콤의 최대주주인 LG가 적극 수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데이콤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를 50% 이상 선임하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며, 감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계열사간 출자 및 내부거래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며, 이러한 내용은 그해 3월에 열린 데이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당시 주가는 데이콤이 약 290,000원선이었고 그 이후 약 70만원대까지 상승했다가 2000년 4월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데이콤이 DMI를 설립하여 부실회사인 LG인터넷(채널아이)의 사업부문을 인수한 것 때문인데 이는 원고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기 이전에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추천한 사외이사도 2000년 9월 금감위의 제동에 따라 사임하였습니다. 그 이후 DMI와의 합병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는데다가 증권시장 내에서 데이콤의 수익성에 대한 회의감이 퍼져 데이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고의 소액주주운동과 데이콤의 노동쟁의와 직장폐쇄, 그리고 데이콤의 주가 하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위 피고는 원고의 소액주주운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된 데이콤에서 파업이 발생하고, 직장폐쇄가 단행되었으며, 주가가 하락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미국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 중 80% 이상이 사외이사입니다).

셋째, (생략.)

넷째, 원고는 그 동안 소액주주운동을 통하여 부당하게, 그리고 법에 위반하여 기업을 괴롭힌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원고는 그 동안 기업의 신규사업투자결정이나 신규사업투자의 실패 등의 경영상의 판단잘못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가령 삼성전자가 AST 투자실패로 인해 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지만 경영진의 실패에 대해 법적책임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니다. 모든 투자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당행위가 명백한 사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라고 판명된 사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마치 원고가 무슨 불법적인 운동이라도 펼쳐 온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여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제2기사의 허위성

피고는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소리 없는 전쟁”, “고전적인 전쟁”, “6·25전쟁의 망령”, “6·25전쟁의 지속”, “구시대의 전쟁”, “좌익의 지속적인 공격”, “민중의 입장”, “체제변혁적”, “좌경화의 길”, “국정파탄”, “좌익”, “국정의 농단” 등의 격렬한 표현을 쓰면서 원고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민(民)에 의한 자본의 통제’에 있는데 이는 바로 좌경화 다시 말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우익이 총괄 기하여 좌익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의 악몽을 두려워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색깔론과 전쟁론을 불러일으키는 매카시즘적·냉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의 소액주주운동으로 인해 마치 우리 나라가, 우리의 시장경제가 끝장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그리고 앞서 살펴 보았듯이 소액주주운동이야 말로 가장 자본주의적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소액주주운동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주식회사 제도를 형해화시켜 온 고질적인 재벌의 병폐를 해소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소액주주운동은 IMF 이후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소액주주운동 또는 주주대표소송의 취지와 목적, 그 성과를 정반대로 왜곡하면서 원고를 시장경제의 ‘적’으로, 그리고 좌익세력으로, 마치 좌익세력이 6·25전쟁을 일으켜 공산화를 꾀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도모하는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들은 적어도 원고들에 관한 한 모두 허위·왜곡·과장된 내용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제1-2기사가 대부분 허위·왜곡·과장된 내용으로서 원고의 명예와 인격을 엄청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요컨대 피고들(자유기업원 및 그 대표)이 인터넷에 소액주주운동에 관하여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매도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참여연대의 건전한 활동을 비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위 시비에 대한 평가

위 소송은 그간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직접 소액주주의 의견을 결집하여 투쟁하고,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여 기업풍토 감시에 애써온 시민단체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견제, 감시를 받는 기업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⁵⁾⁶⁾

그렇지 않아도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강력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고비마다 나타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약점을 공개적으로 문제삼고 적극적인 시정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는 소액주주운동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른바 주주민주주의는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혁론자와 규제당국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에서 소액주주의 경영참여 또는 주주민주주의를 거부하기도 한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운영방식에 반대하는 주주(소액주주)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이다. 그것은 경영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위협수단이 되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경영에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주식을 팔아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는 주장, 즉 '株式處分'을 회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소액주주의 유력한 구체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다. 주주에게는 고유의 권리로서 재산적 이익에 관한 自益權 이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의결권·소수주주권 등 共益權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주식의 처분은 주가하락 등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반대론은 또한 우리나라가 기업의 투명성제고 및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최근 도입한 사외이사제도에 관해서도, 그것이 일상적 경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사외이사)의 간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비용만을 부담시키고 아울러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서 대리인비용을 높이게 된다고거나, 사외이사들이 경영효율성(이윤극대화) 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공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회사를 準公的 機關化하는 결과를 가져와 계약의 집합체(the nexus of contracts)인 기업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⁸⁾

어떻든 소액주주운동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업측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II. 소액주주보호의 법리와 현실

1. 그간의 사정

그 전반적 상황 및 소액주주운동의 구체적 성과에 관해서는 오랜 현장경험을 가진 하일호 변호사가 잘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단히 윤곽만 언급한다.

종래 우리 회사법상 소액주주의 권익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⁹⁾ 그러나 이들이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경영에 제동을 거는 일은 극히 드물었으니, 그 권리행사요건이 비현실적이고, 권리주장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큰 탓도 있으나, 소액주주들의 의식

5)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총선에서 상당한 정치권 정화의 성과를 올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실로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본건 소송과는 일단 무관하지만, 그 판단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6) 우리나라의 소액주주의 지위 및 소액주주보호운동에 대한 전반적 검토에 관하여는 강명현, 「한국의 소액주주권」, (한국개발연구원, 1999) 참조.

7) 대니얼 피셀 저/ 김정호 역, 소액주주운동 비판, (자유기업센터, 1999), 7-11면.

8) 위의 책, 50면 이하.

9) 김성태, 「少數株主保護制度에 관한 고찰」, 경회법학 제28권 1호(1993), 48면 이하 참조.

수준이 스스로 권리행사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른바 권리위에 잠자는 자에 머문 탓도 없지 않았다.

2. 제도적 보완

그러다가 IMF 이후 시민단체의 활동을 계기로 소액주주운동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 첫 가지적 성과로서, 제일은행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00억의 배상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 이 운동은 구체적으로 소액주주의 위임, 또는 의결권위임을 받아 주총에 참석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거나 표대결을 벌이기도 하였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방법, 또는 법정투쟁 등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영남제분 대주주에 대한 소송사례도 있는바, 온라인매체를 통해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대주주가 이를 어기고 주식을 처분한데 대하여 소액주주들이 제소, 상당한 합의금(17억)을 받아내기도 했다.¹⁰⁾

이 운동은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그 힘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문제제기 또는 시정요구를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소액주주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투명성 제고 등 국가적 경제개혁에도 일조를 하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러한 소액주주운동만을 의식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의 각종 경제관련법령의 입법청원, 여론조성 등에 힘입어, 그간 상당한 경제관련 법령의 개정, 보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회사분야 법령의 보완 내용을 이 자리에서 모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1998년, 1999년 기본법인 상법 회사편의 개정취지와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최근 법률 제6488호로 개정, 공포(2001년 7월 24일)된 상법 회사편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친다.

1.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3조의2 신설).

나.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10) 영남제분은 2000년 11월 대주주가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다. 이에 대주주인 사장이 온라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공식 부인하자 주가는 급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탄 바 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자 대주주가 약속을 어기고 나홀로 지분을 팔았으며, 고가에 주식을 매입한 소액주주들이 약속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다. 조선일보 2001.8.10. 참조.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23 신설).

다.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회사 영업의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함(법 제374조 제1항 제4호 신설).

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

마. 이사회회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의 회사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393조).

바.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함(법 제418조).

요컨대 활발한 소액주주운동에 힘입어 회사분야에 있어서는 현실과 법의 괴리가 상당히 좁혀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Ⅲ. 남은 과제: 증권집단소송제도

1. 집단적 분쟁의 해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이래,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책임추궁장치의 일환으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론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¹¹⁾ 증권시장과 경·재계의 핫·이슈로 등장하였다.¹²⁾

집단적 분쟁은 사회관계가 복잡화함에 따라 각종 영역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증권관련 분쟁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

11) 법률안은 1996년 작성한 집단소송법시안(1990년 법무부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작업), 1999년 국회의원회의 의원법으로 성립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경실련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가 마련한 집단소송법시안, 현재 국회의원 26명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이하 "2000년 법률안"이라한다) 등이 있다. 2001년 현재 정부 차원에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마련중이다.

12) 2001년 3월 현재,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나 시세조종행위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집단소송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집단소송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가 허다하며, 이 문제에 관해서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분쟁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¹³⁾

먼저 종래의 제도를 보면, 선정당사자제도(민사소송법 제49조)와 공동소송제도(법 제61조)가 그것이다.

(1) 선정당사자제도

선정당사자제도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선출하여 그에게 소송수행을 맡기는 제도이다. 이는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관계이므로, 선정당사자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으로 제도이용 여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모든 당사자가 일일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고, 소송중 일부의 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이 중단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비용도 줄어들며, 법원으로서도 대표자로 선정된 일부 자에게만 서류를 송달하면 되므로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등,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는 효과적인 집단적 분쟁해결책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절차법체계를 가진 일본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를 확대·보완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¹⁴⁾

선정당사자제도를 집단소송과의 비교해보면, 양자 모두 대표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고 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선정당사자의 선정은 서면에 의한 개별적인 수권이 필요하며, 선정자도 일일이 주소·성명을 적어 특정이 되어야 하지만, 집단소송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나서는 대표자에게 그 소송수행을 허가한 이상,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제외 신청이 없으면 당연히 수권이 있는 것으로 보며, 또한 집단 구성원을 주소·성명을 적어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요컨대 선정당사자제도는 다수당사자소송을 단순화한 것일 뿐이지만, 집단소송제도는 법원의 후견 하에 집단소송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¹⁵⁾ 따라서 대량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즉 불특정다수의 소액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제도는 이용되기 어렵다. 또한 선정당사자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와 선정당사자에게만 미칠 뿐, 그 선정자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임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기에 적합한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를 선정당사자로 선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각 피해자가 선정자로 참여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당사자에 대한 구제장치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점이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이다.¹⁶⁾

13)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별 분과위원회, 「집단소송법 시안 해설」(1996.12.) 참조.

14) 이시윤, 민사소송법(신정3판), (박영사, 1998), 208면; 정윤모·손영락, 증권집단소송과 투자자보호, (한국증권연구원, 2001), 14면.

15) 강현중, 민사소송법(신정판), (박영사, 2000), 158면.

16) 정윤모·손영락, 전제서, 15면 참고.

(2) 공동소송

공동소송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이다.¹⁷⁾ 따라서 발행기업의 허위 유가증권신고서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이 공동원고로 공시기업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하여 각 공동소송인은 동일절차에서 병합 심리되는 한, 동일한 기일에 변론·증거조사·판결도 같이 받게 되어, 사실상 소송진행을 같이하게 되므로, 당사자에게 편리함은 물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된다.¹⁸⁾

통상의 공동소송은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소송으로, 개별당사자 자신이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므로 분쟁당사자수가 많은 소송사건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특히 피해액이 경미하여 각 개인으로서는 독립하여 소송당사자가 되기를 꺼리는 당사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필요적 공동소송제도는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의 승패가 공동소송인 사이에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되기를 꺼리는 구성원이 있는 한, 사안의 일괄적 해결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소송제기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¹⁹⁾

(3)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이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상법 제403조)으로서, 민사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담당의 한 예이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소제기를 결정하고 또 회사를 대표하므로 회사 스스로 감사로 하여금 그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나, 이사와의 각별한 관계로 책임추궁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에, 상법은 소수주주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소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²⁰⁾

또한 원고인 주주가 받는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게 된다. 이점에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제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주주로서는 직접적으로 소를 제기할 유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4) 현행 제도의 한계

증권거래실무상 대주주·경영진의 전횡, 증권거래와 관련된 불공정·사기적 거래, 부실·허위공시, 부실회계감사 등으로 소액 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증권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하여 장기적 침체와 기업자금조달의 경색은 심화된다.

이에 대한 피해구체책으로 기존의 소송제도는 한계가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근래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 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시민단

17) 이는 다시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나뉘지만, 여기서 상세한 논의는 피하기로 한다.

18) 이시윤, 전제서, 208-216면 참조.

19) 정윤모·손영락, 전제서, 16-17면.

20)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706면 이하 참조.

체 등에서 신문광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원고를 모집을 하는 일이 잦다.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욕구는 커져가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송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집단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1대1의 당사자관계를 전제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²¹⁾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다.²²⁾

2.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론

(1) 법안의 골격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집단소송안은 증권거래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만을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우선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 집단구성원에 대한 법원의 통지, 직권증거조사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 집단소송의 대상을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고, 셋째, 화해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넷째, 분배의 적정성을 위해 분배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²³⁾

여기서는 지면사정상 그간의 상세한 배경설명²⁴⁾과 그 구체적 내용-- 집단소송의 당사자, 대상, 법원의 허가결정, 소송절차상의 특칙, 소송비용, 분배문제 등--은 언급을 생략하고, 이러한 제도도입에 대한 찬반논의의 근거만을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2) 찬반론의 근거

1990년대 이후부터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화작업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그에 대한 반론 또한 강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그 찬반론의 주요한 논점만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21) 정윤모·손영락, 전계서, 16면 참조.

22) 이 제도를 안출,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증권집단소송이 실용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구체수단(a practical and inexpensive way)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James D. Cox et al. *Coporations*, (Aspen Law & Business, 1997), pp. 398-399.

23) 정윤모·손영락, 전계서, 110면 참조.

24) 상세한 논의는 정유철, “기업내용공시제도와 증권집단소송”, 연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2001), 81-83면 참조.

1) 찬성론²⁵⁾

1- 규제·감독의 역할에 대한 보완책 강화필요

행정적 규제의 완화 내지 최소화 추세에 비추어, 투자자 등의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시스템이라도 강화할 필요가 크다. 그래야만 경제활동의 자유의 극대화에 따른 반작용으로 인해 증가하는 투자자피해를 줄일 수 있고, 집단소송법이 최적의 대안이다.

2- 집단적 권리구제의 효율성

기업에 비하여 시장의 다수 개인투자자는 그 정보나 자금 면에서 현저히 열세이며,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교환의 장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그 피해의 규모는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액인 경우가 많고, 권리주장면에서도 소송비용, 입증의 어려움 등 소송기술상의 부담이 과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하나의 절차에 통합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나아가 피해구제상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기업측의 잇점

집단소송은 가해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볼 리한 것이 아니다. 집단소송에서는 개별소송의 경우에 피고가 개별적으로 응소하여야 하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집단의 대표당사자와 단일 협상창구를 열어 화해나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유리하다. 법원으로서도 사건부담경감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4- 경영투명성 확보장치

IMF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강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회제도의 도입 등 수 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구제면에서의 배려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증권집단소송은 각각의 주주들이 자신의 손해회복을 위해 제기하는 것이므로 입법화 이후 활성화가 기대되고, 기업경영진의 전횡에 대한 억제장치로서 막강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²⁶⁾

5-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강력히 견제되므로, 기업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것이므로, 기업의 체질강화 및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증대될 수 있다.

25) 찬성론도 어떤 나라의 입법례를 모델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정윤모·손영락, 전계서, 106-107면.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결과보고서,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000, 11. 30., 7면 이하 참조.

26) 이러한 주장은 주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다(서울경제신문, 2001. 2. 21.).

2) 반대론

1- 시기상조론

현재 우리의 경제사정상 기업은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집단소송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경제여건이나 기업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무리한 도입추진은 엄청난 파급효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아 도입론은 시기상조이다.

2- 기업활동의 위축

집단소송은 그 기능상 피해자인 소비자·주주 및 투자자 보호에 치중하게 되므로 소송의 제기는 기업의 경영활동은 물론 기업의 존립 자체마저 위협한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이 폭주할 것이며, 기업은 자칫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²⁷⁾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명예와 영업활동 나아가 주가 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3- 제도남용의 소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해당회사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어,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선동함으로써 소송외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위협을 하는 등, 남용 및 남소의 가능성이 높다.

반대론을 펴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미국에서도 그 부작용이 문제되어 1995년과 1998년 집단소송제에 대한 보완입법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한다.²⁸⁾

4- 민사소송법 체계와의 불일치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을 넓히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기판력제도와 어긋나며, 사실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문제, 변론주의 등 집단소송제는 현행 민사절차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요컨대 집단소송제도는 미국법을 본받은 것으로, 우리의 대륙식 소송법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제도간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질적인 제도를 마구 도입하면, 기업 및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5- 변호사만 득을 보는 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소수의 전문변호사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 실제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²⁹⁾ 집단소송은 대부분 화해로 종결되는데, 기업

27)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과 경영자의 연대책임을 묻는 형태가 될 것이다. 경영자로서는 이러한 위험에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751-766면 참조.

28) 미국의 입법적 보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정유철, 전제논문, 37면 이하(제4장 제4절 1995년 증권소송개혁법 및 제5절 1998년 증권소송통일기준법) 참조.

29)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그 주도권은 변호사들이 쥐게 되며, 이러한 변호사를 감시해야하는 원고, 즉 투자자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소송의 진행과정을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집단소송은 주가하락에 대한 강제보험으로 전락되어 그 비용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호·박양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자유기업원, 2000), 36-49면.

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감시기능과 투자자보호의 이념보다는 변호사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우려가 있다.³⁰⁾

(3) 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피해를 신속·저렴한 비용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과감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론 중 민사소송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도도 판결의 효력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집단을 형성하고 그 구성원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며, 제외신고를 한 경우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시기상조라거나 기업과 경영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우리의 경제개혁이 화급함에 비추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거듭 지적하거니와 집단소송사유는 증권거래법상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기업경영자는 종전과 같은 방어적이고 소극적, 회피적 태도로 증권시장에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태도를 불식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 기업은 '소수주주들이 지분을 넘어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보유한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하라는 훈계는 바로 전횡을 일삼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말이다. 장기적으로는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증시의 신뢰회복에 획기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대론이 드는 제도남용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입법기술적으로 면밀한 보완을 하고, 그 운용에 묘를 살린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요건을 엄격히 하고, 법원의 사전·사후 감독과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³¹⁾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제도는 기업이나 경영진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법안도 그 제소사유를 부실회계, 주가조작, 공시의무위반 등 증권거래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악용소지는 크지 않다고 본다.

IMF를 계기로 우리는 이미 엄청난 제도개혁을 하였고, 경제관련 법령의 개폐만도 수백건에 이를 정도의 변화를 치렀다. 기본법인 상법만 보더라도 최근(2001.7.24.) 개정을 포함하여 3차례의 대폭적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기업경영이나 증권시장에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제·감사위원회제도·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 등 새로운 법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결정적 기여를 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도입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세심한 입법을 한다면 증권집단소송은 경영풍토의 개선과 증권시장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30) 실제 최근의 기술주들의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변호사라는 주장이 있다. 뉴욕의 국립경제연구소(NERA)는 지난 10년간 증시관련 집단소송을 분석한 결과, 원고측 투자자들이 피고측인 기업들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주가폭락에 따른 손실금의 3.27%에 불과한 반면, 소송대행변호사들은 보상액의 30%를 웃도는 건당 2백50만달러의 수입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EC도 최근 보고서에서 "증시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측 투자자들은 이겨봤자 1달러 잃고 7~14센트의 보상금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2001. 4. 10. 1면. 정유철, 전개논문, 87면 각주 231 재인용.

31) 전개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결과보고서, 12-13면 참조.

IV. 맺음말

전체적으로 볼 때, 그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소액주주운동은 우리의 경제를 선진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였으며 전문성제고에 큰 몫을 하였다고 본다. 최근에는 주주총회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초청하고, 인터넷으로 그 실황을 중계하는 금융기관(조흥은행)도 등장하였을 정도이다.³²⁾

아울러 기존의 그릇된 재벌행태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이로써 우리의 기업풍토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³³⁾ 오히려 이러한 운동이 더 확산되어 일반 투자자의 의식개혁이나 기업의 소유구조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에 여론을 모아 힘을 신고, 입법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 취지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글을 끝맺기 전에 몇가지 사항을 향후 과제로 거론해두고자 한다.

먼저 投資者의 倫理 문제이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자도 나름대로 증권시장의 구성원이자,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책임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책임한 투자를 한 다음, 손해가 생기면 이를 전부 남의 탓을 돌리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일임매매·투자보장약정 등에서 그 폐단을 자주 보게 된다. 우리의 소액투자자들은 短期 時勢差益에 골몰, 투자자 개인으로는 물론 전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또한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투자결정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라는 기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⁴⁾ 정부 내지 감독당국도 시장감시기능 및 시장교란행위·대주주의 위법행위에 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官治金融을 불식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2) 매일경제 2001.2.24.

33) 다만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행태가 보이기도 한다. 최근 대한방직의 경영권 다툼에서 소액주주의 반란으로 알려졌던 움직임이 실은 M&A를 이용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으로 밝혀져, 이를 주도한 S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조선일보 2001.8.29. 그러나 이는 본고에서 말하는 소액주주운동이 아니다. 일반 투자자로서도 이러한 악용가능성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34) John R. Boatright, *Ethics in Finance*, (Blackwell, 1999), p. 99.